의 안 발 의 서

의 안 번 호	2005 -

수 신 : 거창군의회의장 2005. 9. .

제 목 :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 조기 상정 건의문』 채택의 건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 조기 상정 건의문』을 붙임과 같이 채택하여 발표코자 합니다.

붙임 : 『건의문』 1부 "끝"

발의자 김 정 회 (인)

외 인

(찬성자 서명 별첨)

建　議　文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

2004. 3. 2「거창사건등 특별법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6·25 전쟁기간중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거창사건관련 유족들이 오랜 기간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듯 하여 지역주민 전체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쁨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쟁중에 일어난 민간인 희생의 보상에 대하여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 넓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향후 국가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거창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는 3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권행사를 하며 재의요구 하였으며, 불행하게도 제16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지라 재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률안이 자동 폐기됨으로써 유족들은 실의에 빠져 또다시 인고의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창사건은 이미 정부에서 진상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관련자를 처벌한 것으로 타 지역의 사례와 상이한 것으로 정부의 이유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며, 특히 같은 날짜 통과된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원안대로 공포한 것은 민간인 보상차원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 또한 지역간의 차별화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거창사건과 관련하여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유족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류중인 거창사건관련 제·개정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5. 9

慶尙南道 居昌郡議會 議員一同